

WE ARE YOUR DOL



Department of Labor

A proud partner of the American Job Center network



노동권과 보호장치 뉴욕의 가사 노동자

가사 노동자를 위한 정보

가사 노동자와 그 고용주는 2010년 11월 29일부로 발효된 가사 노동자 권리 장전을 포함해 노동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bor.ny.gov를 참조하십시오.

가사 노동자는 누구입니까?

가사 노동자는 타인의 자택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직무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병자 또는 노인 돌보기
- 가사일
- 고용주의 가정에서 이뤄지는 기타 가사 업무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가사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의 자택에서 파트타임 베이비 시터와 같이 임시로 일하는 자
- 고용주의 친척 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가사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사항

가사 노동자 권리 장전을 포함한 뉴욕주 노동법에 따라 귀하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주 40시간 근무 시 기본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고용주 자택에 거주할 경우, 주 44시간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함).
- 주중 하루(24시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는 당일 일하기로 동의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 고용주에 대해 근무한지 1년이 경과했을 시 최소 3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도 있습니다.

- 직장에서 다친 경우 산재 보상 보험
- 직장 밖에서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려 그 결과 7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장애 혜택 보험
- 노인 돌보기 등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에 고용되었을 경우, 초과 근무 및 필수 휴가일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노동법 위반에 대해 직원이 고용주 또는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고용주는 당사자에게 보복을 가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888-469-7365**번으로 전화하거나 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workprot/lsdistts.shtm 에서 노동부 지역 사무소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 가사 노동자 권리 장전은 고용주의 특정 형태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고용주는 귀하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근, 기타 성적 성질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괴롭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성별, 인종, 종교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근로자를 괴롭힐 수 없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보복을 가할 수 없습니다. 법원 또는 뉴욕 주 인권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dhr.ny.gov 또는 전화 **888-392-3644**(수신자 부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귀하와 가족을 위한 저비용 건강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면 뉴욕주 보건부 웹 사이트 nyhealth.gov 를 방문하십시오. 홈 페이지 오른쪽의 "사이트 콘텐츠" 영역에서 "건강 보험 프로그램" 버튼을 찾으십시오

가사 노동자 고용주를 위한 정보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뒷면에 열거된 최소 혜택을 제공합니다
- 근로자에게 매주 임금을 지급합니다
- 서면 허가 없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돈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 (공제는 법과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파손 또는 기타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제 내역이 기재된 서면 통지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이 근무한 시간, 지급된 임금 및 임금 공제에 대한 상세 급여내역 및 시간 기록을 보관합니다
- 직원에게 병가, 휴가, 개인 휴가, 휴일 및 근무 시간 정책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 직원에게 직원 정규 급여율 및 초과근무수당과 정규 급여가 포함된 서면 통지를 제공
- (이 양식은 다음 주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labor.ny.gov/formsdocs/wp/ellsformsandpublications.shtm.)
-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 귀하 또는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자를 대신해 실업 보험료 내역을 제출하고 금액을 지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노동부 간행물 IA 318.D, 실업 보험에 대한 가구주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간행물은 labor.ny.gov/formsdocs/ui/IA318D.pdf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재 보상 보험 및 장애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뉴욕주 보험 기금(NYSIF) 또는 뉴욕에서 이러한 유형의 보험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NYSIF는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고용주에게 저가 산재보상 및 장애 혜택 보험을 판매하는 종합 서비스 보험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ysif.com을 방문하십시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연방 및 주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에 대한 정보는 tax.ny.gov에서 볼 수 있는 뉴욕주 세무 및 재무부 납세 게시판 MU-350을 참조하십시오.

이주 가사 노동자와 그 고용주에 대한 참고 사항:

가사 노동자 권리 장전을 포함한 노동법 및 세법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